

● 技術解説 ●

# 電氣事業法上 電氣工作物의 分類 基準에 關한 小考

On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electric  
facilities in the electric  
business law

趙炳國  
動力資源部 電力局

## 1. 序言

現代의 產業活動 및 文明生活에 있어 가장 基本이 되는 原動力으로서 우리周邊에 항상 함께 生活하여야 하는 것 中의 하나가 電氣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장 普遍化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取扱에 있어 항상 安全을 要하며 손쉽게 다루기 어려운 것이 또한 電氣인 것이다.

왜냐하면, 電氣는 그에 關한 知識이 없이 소홀히 다루어 安全事故가 나면 그 被害의 影響은 取扱者뿐 아니라 隣近에까지 波及되는 特性이 있기 때문이다. 即, 電氣의 管理 및 取扱에는 公共性이 要求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電氣事業法등 電氣關係法等에서는 電氣安全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해 電氣의 管理 및 取扱에 關하여 一定한 規制를 하고 있다.

한편, 이와같은 電氣工作物의 管理등에 關한 規制의 程度는 電氣工作物의 種類에 따라 差異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따라 電氣使用者 또는 電氣關係有關機關으로부터 電氣工作物 種類別 分類基準에 關하여 質疑를 하여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에서는 電氣事業法上의 電氣工作物 種類別 分類基準, 特히 自家用 電氣工作物과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分類基準을 明確히 하고 同工作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電氣工作物에 關한 責任限界를 明確히 함으로써 電氣工作物 保安管理業務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만,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에 對하여는 그 分類基準에 關한 別問題點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詳述을 省略한다.

## 2. 問題의 提起

電氣事業法은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경우에는 保安擔當者를 두어야 하며,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경우에는 保安擔當者를 두지 않고 韓國電氣安全公社가 2年에 1回씩 保安을 點檢하여 주는 등 電氣工作物의 種類에 따라 保安規制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同一建物 또는 同一構内에 韓電의 電氣供給規程에 의하여 韓電과 契約된 두個以上의 電力供給單位, 例를 들면 韓電과 契約된 電力容量 (契約最大電力)이 70kW인 A와 6 kW인 B등 2個의 供給單位가 있을 경우 當該 電氣工作物이 自家用 또

는 一般用 電氣工作物中 어느 電氣工作物에 該當하는지를 決定하기 위한 電氣工作物 單位劃定에 있어 각각의 容量을 合算하여야 하는지가 問題될 수 있다.

1) 2개의 供給單位容量을 合算하여야 한다면 合計容量이 76kW로서 自家用 電氣工作物에 該當되지 만

2) 2個의 供給單位를 각각 別個로 보아야 한다면 A, B 모두 低壓으로 供給되는 限 각각 75kW未滿으로서 一般用 電氣工作物에 該當되기 때문이다.

### 3. 電氣事業法上 電氣工作物의 種類 및 規制內容

#### 가. 電氣工作物의 定義

一般的으로 “工作物”이란 人工的으로 労力を 加하여 土地등에 固定시킨 設備를 말하는 바 “電氣工作物”이란 發電, 送電, 變電, 配電 또는 電氣使用을 위하여 設置하는 機械기타의 工作物등 電氣事業法 第3條 第7號에 規定된 것을 말한다.

#### 나. 電氣工作物의 種類別 内容

現行 電氣事業法은 電氣工作物의 管理主体 또는 規模를 基準으로 다음과 같이 3 가지 種類로 分類하고 있다.

##### 1) 電氣事業用 電氣工作物

○電氣事業者가 電氣事業을 위하여 發電, 變電, 送電 또는 配電등에 直接 使用하는 電氣工作物을 말한다 (法第3條 第8號).

○여기에서 電氣事業者는 一般電氣事業者(韓電)와 特定電氣事業者(產業基地開發公社, 京仁에너지株式會社등)를 말한다.

##### 2) 一般用 電氣工作物

○他人으로부터 低壓 即, 600V 以下의 電壓과 75kW未滿의 受電电力으로 受電하여 그 受電場所와同一構内(이에 準하는 區域내를 包含함)에서 그 電氣를 使用하기 위한 電氣工作物을 말한다. 다만, 그 受電用 電線路以外의 電線路에 依하여 그 構内以外의 뜻에 있는 電氣工作物과 電氣的으로 接續된 것과 電氣事業法施行規則 第1條 第2項 但書의 各號에 羅列된 것은 除外된다 (法第3條 第9號 및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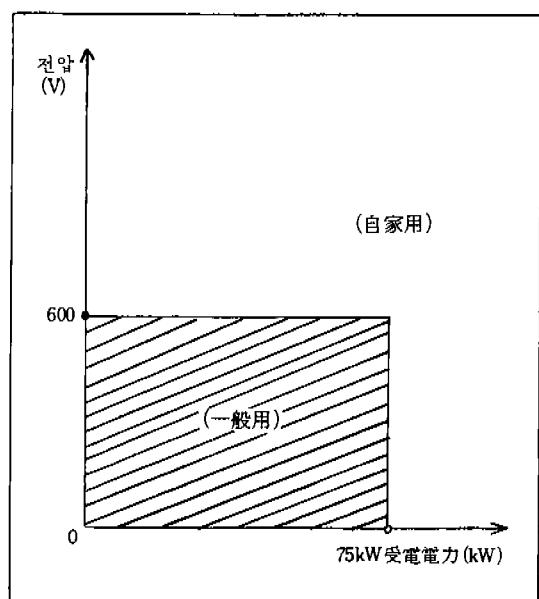
#### 法施行規則 第1條 第2項)

○여기에서 “他人”이라 함은 主로 韓電이 該當되겠으나, 特定電氣事業者가 法第13條 第1項 但書規定에 依하여 그 發電所와 同一構内에 電氣를 供給하는 경우의 特定電氣事業者, 热併合發電所設置者가 施行令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가 生產한 電力中 剩余電力を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依한 集團에너지供給區域內의 다른 生產業體에게 供給하는 경우의 热併合發電設置者(自家用 電氣工作物設置者)도 包含될 수 있겠다.

##### 3) 自家用 電氣工作物

○電氣事業用 및 一般用電氣工作物以外의 電氣工作物을 말한다 (法第3條 第10號)

参考로 理解의 便宜를 為하여 一般用과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區分方法에 있어 特別한 경우를 除外한 一般的인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即, ○一般用電氣工作物: 다음의 2 가지 要件을 充足하여야 함

○600V이하이고 75kW미만일 것

○自家用電氣工作物: 다음의 2 가지 要件中 1가지 以上만 充足하면 됨

• 600V를 초과하거나 75kW이상일 것

#### 다. 電氣工作物 保安規制內容

電氣工作物別	電氣事業用 또는 自家用	一 般 用
主要規制内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工事計劃의認可 또는 申告業務 (使用開始 申告의 무一自家用에 한함)</li> <li>• 使用前, 용접, 定期検査를 받을 의무</li> <li>• 電氣技師등 國家技術資格所持者로써 保安擔當者를 選任할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國電氣安全公社가 2年에 1回 쇠 保安點檢實施</li> <li>• 保安擔當者 選任 義務敘음</li> </ul>

#### 4. 電氣事業法과 電氣供給規程과의 關係

가. 電氣供給規程은 一般電氣事業者(韓電)와 電氣使用者間에 電力의 受給에 따라 必要한 電氣料金其他 供給條件을 定한 一般電氣事業者(韓電)의 社規로서 同規程은 一般電氣事業者(韓電)가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施行하는 것이며(電氣事業法 第15條) 電氣工作物 單位劃定의 基準이 되는 要素인 電壓, 設備容量 및 使用場所에 關하여 電氣事業法令과 韓國의 電氣供給規程에 定하여져 있는 内容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區分	電 氣 事 業 法 內 用	電 氣 供 給 規 程 根 擬	電 氣 供 給 規 程 內 容	規 程 根 擬
電壓	• 他人으로 부터 받는 電 壓(600V)基 準	施行規則 第1條	• 供給電壓 은 韓電이 決 定하는 電壓 으로 함	第75條 第2項 第76條 第4項 등
容量	• 受電壓力 (75kW)基準	"	• 契約最大電 力	第17條
場所	• 受電場所 와 同一構內	"	• 供給單位 (需要場所)	第23, 24條

나. 이와같이 現實的으로 電氣使用者들이 電氣를 使用함에 있어서는 電氣供給規程의 適用을 받고 있음을 뿐 아니라 또한 電氣供給規程은 政府의 認可를 받아 施行하는 것이므로 電氣事業法上의 電氣工作物

劃定에 있어서 同法에 明示的으로 規定되지 않은 事項에 對하여는 電氣供給規程上의 需用單位(供給單位)劃定基準을 參考할 수 있는 것이다.

#### 5. 電氣工作物 單位劃定에 關한 電氣事業法과 電氣供給規程의 內容

##### 가. 電氣事業法令上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電氣事業法令은 電氣工作物 單位劃定基準에 對하여 同法施行規則 第1條 第2項에서 “……受電場所와 同一構内……”라고만 規定되어 있을 뿐 “同一構内”의 概念에 對하여는 規定된 바가 없다. 다만, 同法 第13條 第1項에 特定電氣事業者가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電氣供給이 可能한 場所로서 “……그 發電用 電氣工作物과 同一構内에 있는 兼業設備”를 規定하고 있으며 同法施行規則 第15條 第1項에서 法 第13條 第1項의 “同一構内”에 對하여 “……당, 울타리, 기타의 施設로 他人의 出入을 制限하는 地域을 말한다”고 規程하고 있는 바, 同規定이 同法施行規則 第1條 第2項의 “…同一構内…”에 對하여 規定된 것은 아님으로 直接援用하는 것은 困難하나 別途의 規定이 없으므로 參考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나. 電氣供給規程上

이와같이 電氣事業法令에는 電氣工作物 單位劃定基準에 對하여 “同一構内”以外에 별다른 規定이 없는데 對하여 韓電의 電氣供給規程에는 供給單位(需用場所)의 劃定基準에 對하여 자세하게 規定되어 있는바 이에 對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基準

가) 同供給規程 第24條 第1項에 依하면 “同一需用場所”라 함은 다른 需用場所와 區分하여 電氣를 供給할 수 있는 區劃된 場所를 말하며 1構내 또는 1建物單位로 劃定함을 原則으로 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나) 다만, 需用의 目的 또는 形態上 1建物 또는 1構내가 數個의 單位로 區分되고 각 單位別로 電氣를 供給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單位를 1需用場所로 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는 바.

다) 同規程 第24條 第1項의 이와같은 規定은 電氣工作物 單位劃定에 關한 原則의in 規定으로 볼 수 있는 電氣事業法 施行規則 第1條 第2項의 "...同一構內..."概念과 原則의in 面에서 一脈相通하는 것이라고 判斷된다.

## 2) 供給單位劃定의 適用例

이에 關하여는 同規程 第24條 第2項에 住宅, 商店 및 商街, 市場, 工場, 事務所 등으로 區分하여 자세히 規定하고 있는 바(內容別添 參照), 同一構內 또는 同一建物內에 所有權이 다른 2個以上의 接續된 電氣工作物이 있는 경우로서 同規程 第24條 第2項의 “需用場所 適用의例”를 形態別로 分類하면概略 다음의 3 가지 形態로 區分된다.

### 가) 第1形態

韓電과 契約된 同一供給單位內에 所有權이 다른 2個以上의 電氣工作物이 連接되어 있을 경우

A 공급 단위	B 공급단위
所有權	
甲	乙
丙	丁

例) 綜合計量方式에 의하여 綜合契約된 아파트, 商街, 市場, 業務用 빌딩 등

### 나) 第2形態

同一人所有의 連接된 電氣工作物에 韓電과 契約된 電氣供給單位가 2個以上 있을 경우

甲所有	乙所有
供給單位	
A	B
C	D

例) 1人所有의 1建物에 여려家口가居住, 供給單位가 分離된 경우, 1人所有의 高層建物에서 層마다 서로 다른 業種의 事業을 營爲하는 경우등

### 다) 第3形態

連接된 各電氣供給單位別로 所有權이 서로 다른 경우

공급단위	A	B	C	D
所有權	甲	乙	丙	丁

例) 個別契約아파트

## 6. 結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電氣事業法令 및 電氣供給規程을 基準으로 할때 電氣工作物의 單位劃定의 形態는 대체로 3 가지形態로 區分될 수 있으므로

同一構內 또는 同一建物內에 動力資源部長官이 認可한 一般電氣事業者(韓電)의 電氣供給規程에 依하여 一般電氣事業者(韓電)와 契約된 電氣供給單位가 2個以上 있을 경우 當該 電氣工作物이 一般用 또는 自家用 電氣工作物中 어느電氣工作物이 該當하는지는 電氣安全과 個人의 所有權尊重의 兩面을 調和있게 反映하여 上述한 3 가지 形態에 따른 다음의 基準에 따라 電氣事業法 第3條 第8~10號, 同法施行規則 第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決定하여야 할 것으로 判斷된다.

1) (電氣工作物의 安全確保를 위하여) 同一構內 또는 同一建物內에 있는 各 供給單位의 電氣工作物의 容量을 合算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2) 다만, 所有權이 다른 2個以上의 電氣工作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基準에 依하여 決定하여야 할것이다.

○ 第1形態와 같이 一般電氣事業者(韓電)와 契約된 同一供給單位內에 所有權이 다른 2個以上的 連接된 電氣工作物이 있을 경우에는 供給單位를 基準으로 同一供給單位內에 있는 各 所有者의 電氣工作物의 容量을 合算하여야 할 것임

○ 第2形態와같이 同一所有의 連接된 電氣工作物에 (一般電氣事業者)韓電과 契約된 供給單位가 2個以上 있을 경우에는 所有者를 基準으로 同一人 所有의 連接된 各 供給單位 電氣工作物容量을 合算하여야 할 것임.

○ 第3形態와 같이 連接된 各供給單位別로 所有權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所有者別로 別個로 區分하여야 할 것임.

### 〈전기공급규정상 공급단위 확정기준〉

#### 가) 결정원칙(제 23 조)

○동일 수용 장소에 대하여는 1계약 종별에 있어 1전기공급방식, 1인입 1계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제 1항)

— 다만, 가로등과 농사용은 예외

○동일 수용장소에 계약종별을 달리하는 수개의 수용이 있을 경우 각 계약종별 별로 별 인입, 별 개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제 2항)

— 다만 계약 종별간에 전기공급방식이 같을 때에는 1인입 별계량함

○수용장소의 형태 또는 한전의 전기공급설비 상황에 따라 한전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일

수용장소의 계약종별 및 전기공급방식이 동일한 수용에 대하여 동일계량으로 공급가능 (제 3항)

나. 공급단위(수용장소) 획정 (제 24 조)

1) 기준 (제 1 항)

— 원칙 : 1 구내 또는 1 건물단위로 획정

— 예외 : 수용의 목적 또는 형태상 1 건물 또는 1 구내가 개개의 단위로 구분되고 각 단위별로 전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단위를 1 수용장소로 할 수 있음.

2) 공급단위(수용장소단위) 획정의 적용 “예” (제 2항)

구 分	적 용 예	비 고
○ 주택		
-독립주택	1 구내 또는 1 건물을 1 수용장소로 함	
-연립주택	독립된 각 1호를 1 수용장소로 함	
-아파트	○ 건물 1동 또는 1 구내를 1 수용장소로 함 • 다만 수요가 회당시 구획된 각 1호를 1 개수용장소로 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용부분은 별개의 수용장소로 함을 원칙으로 함	
○ 상점 및 상가	○ 독립된 건물 1동을 1 개수용장소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각 1호를 1 수용장소로 함. • 각호의 소유권이 다른 경우 — 이때 공용설비가 있으면 공동설비	

를 1개의 수용장소로 하거나 어느 1 수용장소에 포함하여 확정 가능

• 각호가 고정된 간격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

• 포괄된 건물 또는 구내를 1 수용장소로 함. 다만, 여러개의 건물이 시장을 형성할 경우에는 동별로 별개의 수용장소로 함

○ 시장

○ 공장, 사무소, 판공서, 학교, 병원기타

○ 1 건물 또는 1 구내를 1 수용장소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동별로 별개의 수용장소로 함

— 동별로 소유권이 다른 경우  
• 공동설비는 별개의 수용장소 또는 어느 1 수용장소에 포함

-동별로 소속계통 또는 회계단위가 상이하고 공동설비가 없는 경우

○ 동일구내에 있는 사택은 별개의 수용장소로함이 원칙

○ 박람회장, 상설경기장 등

○ 가로등, 광고등등

○ 교량, 터널

○ 기타

○ 일정한 가로, 공원 또는 구역을 1 개의 수용장소로 함

○ 1 교량 또는 1 터널은 1 개의 수용장소로 함

○ 건물, 토지등의 소유관계 담장, 주거, 기타 지형지물, 수용의 목적 및 용도 회계단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

• 繪真説明 •

Cezanne (세잔느)의 名画 <에스테크의 바다>

1882~85年, 런던大學 코우털드·인스티튜트·카럴리藏  
1880年代의 前半에 에스테크에서 본 바다의 景望은  
많이 그려졌으나, 이와같이 세로로 길게 된것은 드물다.  
前景의 左右에 높은 소나무가 画面의 構圖를 잡고 있다.  
오른쪽의 소나무는 그下半部에서 아름다운 曲線을 보  
이고 있으며 右端과 左方에 키가 낮은 줄기도 그 曲線에 呼應하고 있다. 綠色은 右上에서 左下 方向으로 跳은 筆触으로 規則的으로 칠해지고 있다. 소나무 저쪽에  
는 空과 海 大地가 画面을 3分하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 消息 • 李承宰 씨 오는 7月 出國

本協會 海外留學生 (82. 4 選拔) 李承宰 씨 (1955 11. 30日生)는 美워싱턴大學校에 留學次 오는 7月에 出國할 豫定이다.

李씨는 서울大學院 電氣工學科 2年을 修了하고 現在 蔚山工大 專任講師로 있다.